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58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4.

발의자 : 이종배 · 서명옥 · 배준영

김기웅 · 권영세 · 김용태

서일준 · 김위상 · 추경호

김소희 · 송석준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,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· 제공,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, 영유아 발달 지원 예방 · 상담 · 치료연계 지원,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·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.

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 정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, 부지 확보 및 임차 비용 부담으로 인해 설치가 지연되거나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되고,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함으로써,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·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

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
제39조의2).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어린이집의”를 “기관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9조의2(국·공유재산의 대부 등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<u>어린이집의</u> 설치 ·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국유재산특례 제한법」에 따라 국유재산을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1. · 2. (생 약)</u></p>	<p>제39조의2(국·공유재산의 대부 등) ----- ----- <u>기관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<u>1.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 센터</u></p> <p><u>2. · 3.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)</u></p>